

## 전남지역 여대생의 성폭력 경험 실태

김 성희<sup>†</sup>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비자·가족아동학과

### Th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of Female Students in Chonnam

Sung Hee Kim<sup>†</sup>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in terms of a continuum. For the purpose, this study made use of the questionnaire data and the interview resources collected from 243 female students. The static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iles and ANOVA.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level of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in terms of a continuum was high. Most female students recognized lots of unpleasant sexual behaviors as sexual violence. The level of experience and recognition of sexual violence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age and sexrole attitude. (*Korean J Human Ecology 1(2):37~47. 1998*)

KEY WORDS: sexual violence, sexrole attitude

#### I. 문제제기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특히 성희롱의 개념은 얼마 전까지도 낯선 개념이었다가 1993년 서울대 조교사건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등장하였다. 일상적 성희롱이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이 사건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91년경부터 여성계를 중심으로 성폭력에 대한 대처운동이 일어나면서 커지기 시작하였다. 1992년 결성된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성폭력에 대해 새로운 의미구조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즉 지금까지 가족의 정통성 침해에 초점을 두어 정조의 파괴라는 차원에서만 문제시하던 성폭력을 여성의 기본적 인권 침해라는 면에서 파악할 것을

<sup>†</sup>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 315 Maegok-dong, Sunchon, Chonnam 540-742, Korea  
Tel: 0661-750-3674, Fax: 0661-750-3608  
E-mail: ksh@sunchon.sunchon.ac.kr

제시하였다.

여성의 성(性)을 남성의 패락에 종속된 것으로 보아 크게 문제삼을 것이 없다고 여기던 단순한 집적거림이나 회통도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한 권리침해가 된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따라 1994년에는 국민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고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이 규정하는 성폭력의 범위와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음행매개, 음란물의 유포 및 제조, 공연음란, 약취유인, 강도강간 등 일부 행위만이 성폭력범죄로 인정되고 있다. 가부장적 성차별 관습하에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성폭력은 매우 다양하고 많지만 법은 여성의 경험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겪는 다양하고 수많은 불쾌한 성적 행동을 성차별적 행위의 연속선 상에서 파악한다면 이런 행위들은 같은 동기를 가진 범죄로 포착될 수 있을 것이다.

성차별이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여대생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욕구가 가장 큰 집단이므로 이들이 경험하는 성폭력 실태는 학내 나아가서는 사회의 성적 불평등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즘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이용하여 성폭력의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경험 실태를 조사하고 연속성의 개념에 따라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범위를 살펴보자 한다.

이의 연구 결과는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성폭력 실태의 진단과 예방,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관련 교육 요구에 기초자료로서 기여하리라고 본다. 특히 본 연구는 가부장적 사고가 전통으

로 잔존해 있다고 보는 전남 지역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지역을 제한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폭력의 개념

형법상으로는 강간 및 강제추행과 이에 준하는 범죄가 성폭력으로 규정되어 있다. 성폭력 특별법은 형법보다 범위를 넓게 잡아서 음행매개, 음란물의 유포 및 제조, 공연음란, 약취유인, 강도강간, 특수강간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배은경, 1997).

그러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매우 넓다. 경향신문(1996)의 보고에 따르면 여학생의 60% 이상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며 썩시하고 말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성폭력으로 느끼고 있다. 그리고 데이트 중 강제적 입맞춤에 대해서도 82%가 이를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있다.

여성이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불쾌한 성적 행위를 반영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1995)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란한 농담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거절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강요하는 것, 작업장에 음란한 그림이나 출판물을 전열하거나 붙이는 것,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추파를 던지는 것,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키스하거나 껴안는 것, 강간미수와 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을 성폭력이라 보고 있다.

성폭력에는 이처럼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극단적인 것까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행위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행 법처럼 독립된 행위로 규정할 경우에는 성폭력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

라 기소된 특정 죄명이 아니면 다른 죄명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배은경, 1997). 예를 들어 강간미수로 기소하였다가 강간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판결될 뿐 추행미수로는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하려면 다른 죄명으로 다시 기소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문제점들로부터 Kelly(1987)는 성폭력에 연속성(continuum)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성폭력을 일상적이고 비가시적인 남성 행동과 극단적 성폭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속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연속성의 개념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폭력을 정도에 따라 등급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무기나 흉기를 사용한 강간이나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 것을 성폭력 1등급으로, 흉기 없는 단순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이나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 것을 성폭력 2등급으로,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이나 성적 접촉을 성폭력 3등급으로,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성폭력 4등급으로 규정하는 것이다(심영희, 1995).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특정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규정 어디엔가 반드시 해당하게 되므로 수많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성폭력과 관련된 법은 성폭력 유형을 각각 분리시켜 놓음으로써 그것이 특정유형에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의 여부로 성폭력의 문제를 제한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의 개념에 연속성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성폭력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언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의 경험 실태와 범주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성폭력의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옷차

림, 신체에 관한 언급, 성적 유모어나 농담과 같은 언어적인 것과 누드사진, 그림 등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붙이는 행위, 음란한 눈으로 지켜보는 행위와 같은 비언어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애무, 부비거나 문지르기, 포옹, 키스, 성행위 강요, 강간과 같은 신체적인 것이 있다.

이러한 성폭력의 유형은 폭력 방식에 초점을 두어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하고(공미혜, 1995), 의도성에 따라 일상적 형태, 유혹적 형태, 보상적 형태, 보복적 형태, 폭력적 형태로 분류되기도 한다(Fitzgerald 등, 1988). 본 연구에서는 폭력의 유형을 폭력행위자의 폭력방식에 초점을 두어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유형으로 분류하여 경험 실태를 조사한다.

## 2. 성폭력 관련 요인

Tangri 등(1982)은 성폭력을 남성의 지배와 사회적 권위가 정당화되는 가부장적 체계의 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이를 사회-문화적 모델로 제시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성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고, 여성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행동에 보상을 받는다. 가문의 대를 잇는 존재로서 강조되는 여성은 자신을 지배하는 남성의 폐락의 대상이 된다. 여성의 주체적 욕망과 요구는 무시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권은 인정받지 못한다.

여성학적 관점에서 사적인 성과 관련된 욕망과 욕구에 대한 권리는 특별히 몸의 권리라는 개념으로 접근된다(심영희, 1995). Tong(1984)은 몸의 권리에는 자기결정권과 존경권이 있다고 했다. 자기결정권(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은 자신의 몸과 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욕망, 욕구 등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존경권(the right to personal respect)

은 자신의 몸 및 이와 관련된 욕망, 욕구, 필요 등이 제대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과거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은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존경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에도 지하철 성추행범의 76%가 대졸이상자라는 보고는(조선일보, 1996) 여성의 성과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존경권이 남성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폭력은 권력을 가진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종속된 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할 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낮은 권위를 부여받는 여성. 예를 들면 연령이 낮은 여성과 소수 집단에 속하는 여성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성이 높다. 실제 남성 전유의 분야에 입학한 여대생들이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크다는 연구결과(Dziech, Weiner, 1994)와 여성의 나이가 어릴수록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성이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Fitzgerald, 1991).

여대생은 보다 많은 권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교내 직원에 의해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도 크다. 공미혜(1997)의 조사에 따르면 여대생들의 16.1%가 남자 교강사로부터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15.2%가 성적 유혹행위를 한번 이상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해은(1998)의 연구에서는 성폭력의 가해자는 선배, 학과선배, 동료 순으로 그 빈도가 높았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성폭력은 남성다운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여성은 성폭력을 당해도 자신의 불쾌감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회화된다. 1997년 서울대 신문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이혜은, 1998에서 재인용) 여대생들은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그냥 넘어간다'가 29%, '주위사람들과의 이야기로 기

분을 푼다'가 25.4%였다. 소극적인 대처가 54.4%를 차지하였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폭력성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모델과는 달리 자연-생물학적 모델(Tangri 등, 1982)은 성폭력을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의도가 없는 생물학적 속성의 반영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모델은 남성과 여성이 상호간에 성적 매력을 느끼면서 성 지향적인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간주한다.

이에 따르면 성폭력은 성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므로 매우 사적인 것이 되어 개인적인 문제로서 무해한 것이 되고 따라서 대처가 소극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부장적 성차별이 가시화된 것이 성폭력이라는 입장에서 이를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도 성폭력은 성차별의 한 행위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보호하기 위해 규제되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에서 성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성폭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 동국대의 조사에 따르면 여대생의 26%가 교내에서 '노골적으로 피부 접촉을 하는 행위'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에 대해 여대생의 43%가 과감히 따지거나 완강히 거부했고, 42%가 소극적인 저항을, 15%는 화가 났지만 참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피해장소로는 술자리가 많았고 그 다음이 학회실이나 동아리실이었다(동국대 여학생부처, 1995).

이혜은(1998) 연구에서는 학내 성적 괴롭힘은 교내 과방이나 동아리방, 강의실 등지에서 자주 발생하였고 가해자 유형별로는 동아리 선배, 학과 선배, 동료, 강사나 교수 순으로 그 빈도가 높았다.

미국에서는 미시간 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경우 25%가 성희롱을 1회 이상 경험하였

다고 했다(Maihoff, Forest, 1983). 아리조나 주립대에서도 응답자 중 40%는 성희롱으로 인해 업무 또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 중 공식적인 대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은 남성 18%, 여성은 20%에 지나지 않았다(Metha, Nigg, 1983).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조사방법이 설문지를 이용한 것이어서 실제적 상황을 나타내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성폭력의 경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연령을 나타내는 학년, 학과의 여학생 비율, 성역할태도 외에 부모의 통제를 나타내는 거주형태도 살펴본다.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여대생이 경험하는 성폭력의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
- (연구문제 2) 여대생이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 (연구문제 3) 여대생의 성폭력 경험 빈도 및 성폭력 범주 인식과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가?

####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전체적 경향과 구체적 상황을 조사하였다. 심층면접에서는 여대생에게 학내에서 성폭력의 경험이 있다면 그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술케 하였다. 설문조사는 후속연구(김성희, 1998)에서와 같이 여대생의 성역할태도, 성폭력 경험

빈도, 성폭력 범주 인식, 학년, 학과의 여학생 비율, 거주형태를 조사한 것 외에 가해자, 피해 장소, 대처방법을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작성된 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성폭력 유형

한국성폭력상담소(1992), 공미혜(1995)의 자료를 참고로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각 영역에서 일상적인 것과 극단적인 것을 포함하도록 문항을 작성하였다. 성폭력 총경험 빈도는 이들 문항을 모두 합해 산출하였다. 빈도에 대한 응답은 '없다' = 1 '한두번' = 2 '여러 번' = 3 '자주' = 4로 분류하였다.

#### 2) 성폭력의 범주 인식

경향신문(1996), 공미혜(1995), 한국성폭력상담소(1992), 배은경(1997)을 참조하여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영역에서의 일상적인 남성의 불쾌한 성적 언동과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쾌한 성적 언동에 대해 평소 성폭력이라 생각하는지(=0) 아닌지(=1)를 물었다. 6문항을 합하여 총 성폭력 범주 인식을 산출하였다.

#### 3)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란 성역할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으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성역할태도는 성폭력의 요인을 설명하는 모델(Gutek, Morasch, 1982; Sheffey, Tindale, 1992; Tangri, Gurt, Johnson, 1982)을 참조하여 4문항 작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계

수인 Cronbach's Alpha는 .71이었다.

### 3. 조사절차 및 분석

설문조사는 전남 지역 남녀공학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1997년 9월에 예비조사를 거쳐 11월에 질문지를 배부하여 대학생이 되어 경험한 바를 근거로 응답토록 하였다. 질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고 회수된 24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로 분석하였고 분석 방법으로는 평균, 빈도분포, 백분율,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심층면접은 질문조사자 중 30명을 임의표집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
학년	1학년	52	21.3
	2학년	29	11.9
	3학년	104	42.6
	4학년 및 대학원	58	24.2
	계	243	100.0
학과의 여학생 비율	2/3 이상	150	61.7
	2/3-1/3정도	68	28.0
	1/3이하	25	10.3
	계	243	100.0
거주 형태	부모와 거주	163	67.1
	자취, 하숙, 기숙사	66	27.2
	친척 및 기타	14	5.7
	계	243	100.0

외설적 그림이나 글을 보게 해서 불쾌했던 것은 30.1%가 이를 한 두번 이상 경험하였다. 언어적 성폭력으로서 외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당해 불쾌했던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두번 이상이 49.6%였고, 음담패설을 듣고 불쾌했던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두번 이상이 72.6%였다. 신체적 성폭력으로서 신체 일부를 고의로 밀착시키거나 만져서 불쾌했던 경험이 한두번 이상 있었던 경우는 46.2%, 키스나 껴안기, 성교를 강제로 당해 불쾌했던 경우가 한두번 이상 있었던 경우도 11.3%나 있었다. 여대생은 성폭력 중 특히 언어적 폭력으로서 음담패설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2> 성폭력 경험 빈도

성폭력유형	없다 (%)	한두번 (%)	여러번 (%)	자주 (%)	제 (%)
시각적	가슴 등 신체의 일부를 음흉하게 쳐다보기	107 (44.8)	116 (48.5)	14 (5.9)	2 (0.8) 239 (100.0)
	외설적인 그림이나 글을 보게 하기	167 (69.9)	62 (24.7)	8 (3.3)	2 (0.8) 239 (100.0)
언어적	외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당하기	118 (50.4)	106 (45.3)	9 (3.8)	1 (0.4) 234 (100.0)
	음담패설을 듣기	67 (28.4)	125 (53.0)	39 (16.5)	5 (2.1) 236 (100.0)
신체적	신체 일부를 고의로 밀착시키거나 만지기	129 (53.8)	108 (45.0)	3 (1.3)	· 240 (100.0)
	키스나 껴안기, 애무를 강제로 당하기	212 (88.7)	26 (10.9)	1 (0.4)	· 239 (100.0)

## IV. 연구결과

### 1. 성폭력 경험 실태

#### 1) 성폭력 경험 빈도

여대생의 성폭력 경험 빈도는 <표 2>와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시각적 성폭력으로서 가슴 등 신체의 일부를 음흉하게 쳐다보아 불쾌했던 경험은 한 두번 이상이 45.2% 이었다.

심층면접에 나타난 여학생에 대한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폭력의 구체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이 ‘너 가슴이 많이 커진 것 같다’, ‘야, 너 요즘 엉덩이가 커졌다’, ‘여자 몸은 팽팽한 것이 좋더라’고 노골적인 표현을 하면서 몸을 위 아래로 훑어보는 걸 자주 볼 수 있다(3학년 S).”, “수업시간에 브래지어 끈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골짜기가 있어야 어쩐다는 등 야한 소리를 서슴치 않는다(3학년 S).”,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으로 플레이보이같은 야한 잡지로 들어가 큰 소리로 와서 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매우 민망했다(3학년 J).”, “한번은 옆트임이 있는 치마를 입고 왔던 적이 있었다. 남학생들이 섹시하다는 등 눈을 어디로 두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등 얘기를 하며 키득키득 웃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치마에 손이 가지 않는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내게는 당혹스러웠기 때문이다. 그 웃음과 눈빛을 나는 기억한다(1학년 S).”, “모 선배는 요주의 인물로 통한다. 만나서 반갑게 인사만 하면 되는데 꼭 허리나 얼굴, 팔안쪽, 어깨 같은 데를 슬며시 만지며 아는 체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는 것을 남성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내의 성희롱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2학년 K).”

## 2)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의 가해자는 주로 누구였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3>과 같다. 친구 및 동료에 의한 성폭력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이해은의 연구조사(1998)와 일치한다. 이들은 특히 음담패설과 외모 및 옷차림에 대한 언어적 성폭력에서 주된 가해자였다. 그 다음으로 낯선인을 포함하는 기타에 의한 성폭력 경험이 많았는데 이들은 특히 신체적 성폭력으로서 신체 일부의 밀착 또는 만지기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 및 친인척, 교수 및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은 극히 적었다.

심층면접에 따르면 선배들에 의한 성폭력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표 3>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유형	친구 및 대학동료 (%)	교수 및 교직원 (%)	가족 및 친인척 (%)	기타 (%)	계 (%)
시각적	가슴 등 신체의 일부를 음흉하게 쳐다보기	77 (58.8)	·	54 (41.2)	131 (100.0)
	외설적인 그림이나 글을 보게 하기	42 (66.7)	1 (1.6)	20 (31.7)	63 (100.0)
언어적	외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당하기	94 (86.2)	2 (1.8)	4 (3.7)	109 (100.0)
	음담패설을 듣기	131 (84.5)	·	24 (15.5)	155 (100.0)
신체적	신체 일부를 고의로 밀착시키거나 만지기	41 (39.4)	2 (1.9)	1 (1.0)	60 (57.7)
	키스나 껴안기, 애무를 강제로 당하기	21 (56.8)	1 (2.7)	·	37 (40.5)

“학내에서 성희롱은 대부분 선배에게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간혹 성희롱에 항의를 하면 뭐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느냐며 오히려 그 여학생에게 벼룩이 없다고 한다. 사과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2학년 K).”, “선배들이 엉덩이를 툭툭 때릴 때가 있는데 불쾌해서 화를 낼 경우 그냥 동생같아서 귀여워서 그런다는식으로 말한다(3학년 J).”, “카니발 때 취한 선배가 치마를 걷어 올렸는데 나는 무척 화가 나서 항의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선배는 장난이었다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과민반응이라는식으로 말했다. 장난이라니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왔다(2학년 J).”, “술취한 선배가 갑자기 가까이 오라더니 귓속말이 할 게 있다고 하고는 귀를 깨물었다. 너무 당황했고 기분이 불쾌했다. 우리 주위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난다. 장난스런 말로 상대방을 낯뜨겁게 하는 경우는 흔하다. 남자들에게는 그런게 다 장난으로 통하는가보다. 그러지 않았으면 한다(1학년 I).”

### 3) 성폭력 장소

성폭력이 주로 일어났던 장소는 학교였다(표 4). 학교에서 특히 많이 발생했던 성폭력은 외설적 그림이나 글에 노출시키기, 외모나 옷차림에 대해 성적으로 평가하기, 음담패설 들려주기였다. 공공장소에서는 신체의 일부를 음흉하게 쳐다보기, 신체의 일부를 밀착 또는 만지기가 주로 일어났다. 집과 학교, 공공장소를 제외한 기타의 장소에서는 강제적 키스나 껴안기, 성교가 많이 발생하였다.

〈표 4〉 성폭력 장소

성폭력유형		집 (%)	학교 (%)	공공장소 (%)	기타 (%)	계 (%)
시각적	가슴 등 신체의 일부를 음흉하게 쳐다보기	48 (38.1)	58 (46.0)	20 (15.9)	106 (100.0)	
	외설적인 그림이나 글을 보게 하기	2 (3.3)	34 (56.7)	14 (23.3)	10 (16.7)	60 (100.0)
언어적	외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당하기	4 (3.7)	70 (64.8)	22 (20.4)	12 (11.1)	108 (100.0)
	음담패설을 듣기	1 (0.7)	96 (65.3)	35 (23.8)	15 (10.2)	147 (100.0)
신체적	신체 일부를 고의로 밀착시키거나 만지기	3 (2.9)	29 (28.4)	46 (45.1)	24 (23.5)	102 (100.0)
	키스나 껴안기, 애무를 강제로 당하기	2 (5.6)	10 (27.8)	6 (16.7)	18 (50.0)	36 (100.0)

### 4) 성폭력 대처 방법

성폭력에 대한 여학생들의 주된 대처 방법은 〈표 5〉와 같이 모른척하기가 많았다. 신체의 일부를 음흉하게 쳐다보는 경우는 82%가 모른척하였고, 키스나 껴안기, 애무를 강제로 당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경우에도 모른척하기가 적지 않았다. 다른 유형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30% 정도가 모른척하기로 대처하였다. 동국대(1994) 조사에서 15%가 참는 것으로 대처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더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리치기, 상

담 및 고발과 같은 적극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특히 키스나 껴안기, 애무와 같은 심각한 성폭력에 대해서 상담 및 고발을 통해 해결한 경우는 매우 낮았다.

〈표 5〉 성폭력 대처 방법

성폭력유형	모른척 (%)	싫다고 말함(%)	소리치고 저항(%)	상담 및 고발(%)	계 (%)
시각적	가슴 등 신체의 일부를 음흉하게 쳐다보기	100 (82.0)	22 (18.0)	.	122 (100.0)
	외설적인 그림이나 글을 보게 하기	23 (37.7)	35 (57.4)	3 (4.9)	61 (100.0)
언어적	외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평가당하기	42 (39.3)	63 (58.9)	1 (0.9)	107 (100.0)
	음담패설을 듣기	48 (32.2)	92 (61.7)	9 (6.0)	149 (100.0)
신체적	신체 일부를 고의로 밀착시키거나 만지기	31 (32.6)	48 (50.5)	16 (16.8)	95 (100.0)
	키스나 껴안기, 애무를 강제로 당하기	4 (12.1)	16 (48.5)	12 (36.4)	33 (100.0)

심층면접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여학생의 대처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후배가 PC통신에서 음란물을 프린트로 뽑아왔는데, 너무 야해서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창피해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얼굴을 가렸다. 남자 후배가 무슨 신문을 보느냐 이렇게 재미있는데 괜히 신문을 본다고 했다. 내가 화를 내면 오히려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 웃어넘겼다(2학년 C).”, “MT때 선배가 자기한테 시집오라고 하면서 껴안고 뾰족을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계속 울었다. 선배였기 때문에 뭐라고 말도 못했다(2학년 J).”

### 2. 성폭력 범주 인식

불쾌감을 초래하는 성적인 행위에 대해 여학생들이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범위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1995)가 규정한 것처럼 일상적인

것도 포함되었다. 고의적인 신체접촉에 대해서 여학생의 93.8%가 이를 성폭력으로 보았고, 음담패설에 대해서도 87.1%가 이를 성폭력으로 인식하였다. 경향신문의 보고와 같이 신체를 유심히 보는 행위에 대해서도 73%가 이를 성폭력으로 간주하였다(표 6).

그러나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데이트중 강제로 입맞춤하기에 대해서는 61.2%가, 데이트를 강요해서 괴롭히기에 대해서는 50.8%, 회식 중 남성이 여성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60%가 이를 성폭력으로 간주하였다. 친숙한 관계에서는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6〉 성폭력 범주 인식

	성폭력 이다(%)	성폭력이 아니다(%)	계 (%)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보는 것	176(73.0)	65(27.0)	241(100.0)
불쾌한 음담패설	209(87.1)	31(12.9)	240(100.0)
고의적인 불쾌한 신체접촉	226(93.8)	15(6.2)	241(100.0)
데이트를 강요해서 괴롭히기	123(50.8)	119(49.2)	242(100.0)
회식 중 술따르기를 강요하기	145(60.7)	94(39.3)	239(100.0)
데이트 중 강제로 입맞춤하기	145(61.2)	92(38.8)	237(100.0)

심층면접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 무심히 던진 말이나 행동이 여성에게 얼마나 불쾌감을 주는지 남학생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3학년 J).”, “음담패설을 친구들 사이에 있는 가벼운 유모나 재치 쪽으로 여기는 것 이 대부분인 것 같다(2학년 J).”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비난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의 성적 행위를 성폭력으로 간주하는 비율이 높지만 남학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3. 성폭력 경험 및 성폭력 범주 인식과 관련된 요인

여대생의 성폭력 경험 빈도와 관련된 것은 학년이었다. 학년이 높은 경우에 성폭력 경험의 빈도가 높았다(표 7). 이는 여성의 나이가 어릴수록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Fitzgerald(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학과의 여학생 비율은 다른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성폭력 경험과 관련이 없었다. 남성 전유의 학과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학내에서의 성폭력 경험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의 거주형태도 성폭력 경험빈도와 관련이 없었는데 이는 부모의 통제가 여학생의 성폭력 경험과 관련이 적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한편 성폭력에 대한 범주 인식은 성역할태도와 관련이 있어서 진보적인 집단에서 성폭력을 더 폭넓게 인식하였다.

〈표 7〉 성폭력 경험 빈도 및 성폭력 범주 인식과 관련된 요인

번호	구분 (N)	성폭력총경험 빈도	총성폭력범주인식
학년	1학년 (52)	8.36	1.42
	2학년 (29)	8.71 f=2.77*	1.50 f=1.69
	3학년 (104)	9.28	1.83
	4학년 및 대학원 (58)	9.37	1.85
학과의	2/3이상 (150)	8.81	1.69
여학생비율	2/3-1/3 (68)	9.48 f=2.33	1.74 f=0.06
	1/3이하 (25)	9.23	1.65
거주형태	부모와 거주 (163)	9.08	1.71
	자취, 하숙, 기숙사 (66)	9.19 f=1.14	1.73. f=0.01
	친척, 기타 (14)	7.91	1.65
전통적:6-10점	(57)	9.43	2.04
성역할태도 중 간:11-13점	(98)	8.95 f=1.85	1.72 f=4.95**
진보적:14점이상	(83)	8.91	1.38

\*:P<.05 \*\*:P<.01

## V. 결 론

본 논문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폭력을 일상적으로 경험하지만 법의 관심은 제한적이라는 데서 출발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고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전남지역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설문, 심층면접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여대생은 음담패설, 고의적인 신체접촉 등으로 불쾌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범위를 연속성의 개념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규정할 경우 여대생이 경험하는 성폭력 실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이 일상적인 장난이나 유머스러운 행동으로 위장되어 여러 형태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성폭력에 대처하는 여대생의 행동도 침묵하기와 같은 소극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기표현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성폭력의 가해자는 친구 및 동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폭력을 당하는 주된 장소는 학교였다. 성폭력은 공공장소나 직장내에서 뿐 아니라 학내에서도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의 의무화, 처벌규정의 제정과 같은 학교측의 조치가 요구된다.

여대생이 불쾌감을 초래하는 성적인 행위를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범위는 법이 규정한 것보다 다양하고 폭넓었다. 고의적인 신체접촉 뿐 아니라 음담패설, 슬파르기 강요에 대해서도 많은 여대생이 이를 성폭력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친숙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폭력을 남녀차별의 한 행위로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폭력 경험이 증가하므로 저학년부터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인 집단에서 성폭력을 더 폭넓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히 전통적 성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지역 여대생에게 가정학 및 여성학 관련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성폭력은 대부분 남성에 의해 유발되므로, 남학생과 일반 성인남성에 대해서도 양성지향적인 가정학 또는 여성학의 교육과 사회교육이 요구된다.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하고 남녀가 공존하는 학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적 노력과 더불어 학생들의 음담패설 추방과 같은 자율적 활동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성폭력과 관련된 법의 보호법 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적극 규정하여 여성의 권리를 전반적으로 보호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즉 성폭력의 개념을 연속적인 것으로 확대 규정하여 여성이 경험하는 수많은 일상적인 성폭력을 포착한다면, 법에 포함되지 않은 성적 언동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을 결정하고 누릴 권리는 적극 보호될 것으로 본다. 이의 구체적 해결방안으로서 미국에서와 같이 성폭력을 등급화할 것을 제시한다.

## 참고문헌

1. 경향신문. 1996. 6. 25.
2. 공미혜(1995).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 요인. *한국여성학* 11:110-137.
3. 공미혜(1997). 여대생들의 성희롱 경험과 의식의 차. *한국여성학* 13(1):29-50.
4. 김성희(1998).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성폭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17-27.

5. 동국대 여학생부처(1995). 94 여학생 대학 생활, 취업준비, 성의식에 관한 실태조사. 학생생활연구. 동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9:3-52.
6. 배은경(1997). 성폭력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 8:51-77.
7. 심영희(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8. 심영희(1995). 몸의 권리와 성관련법의 개선안 - 권력과 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1:72-109.
9. 이혜은(1998). 성적 괴롭힘에 대한 여대생의 대처양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조선일보. 1996. 12. 4.
11. 한국성폭력상담소(1995).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12. Benhabib, Seyla(1987). The Generalized and the Concrete Other. Benhabib and D. Cornell (ed). Feminism as Critique. Polity Press.
13. Dziech, B.W., Weiner, L.(1994). The lecherous professor: Sexual Harassment on Campus.
14. Fitzgerald, L.F.(1991). Sexual Harassment: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a construct. M. Paludi (ed.), Ivory Tower: Sexual Harassment in Academia and the Workplace. New York: Suny Press.
15. Fitzgerald, L.F., Shullman, S., Bailey, N., Richards, M., Swecker, J., Gold, Y., Ormerod, A.J., Weitzman, L.(1988). The incidence and dimensions of sexual harassment in academia and the workpla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152-175.
16. Gutek, Barbara A., Morasch, Bruce(1982). Sex-Ratios, Sex Role Spillover, and Sexual Harassment of Women at Work. *Journal of Social Issues* 38(4):73-77.
17. Kelly, L.(1987). Sexual Violence as a Continuum. in Hammer and Maynard(eds.).
18. Maihoff, N., Forest, L.(1983). Sexual Harassment in higher education: An assessment study. *Journal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Women Deans, Administrators, and Counselors* 46:3-8.
19. Metha, A., Nigg, J.(1983). Sexual harassment on campus: An institutional response. *Journal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Women Deans, Administrators, and Counselors* 46: 9-15.
20. Sheffey, Susan, Tindale, R. Scott(1992). Perceptions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 19:1502-1520.
21. Tangri, Sandra S., Burt, Martha R., Johnson, Eleanor B.(1982). Sexual Harassment at Work: Three Explanatory Models. *Journal of Social Issues* 38(4):33-54.
22. Terpstra, D.E., Cook, S.E.(1985). Complaint Characteristics and Reported Behaviors and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Formal Sexual Harassment Charges. *Personnel Psychology* 38:559-574.
23. Tong, Rosemarie(1984). Women, Sex, and the Law. Totowa, NJ: Rowman & Allanheld.